

2025회계연도

---

# 함평군 결산검사 결과 보고서



함평군 2025회계연도

# 결산검사의견서

함평군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26. 4. 13. ~ 5. 2. / 20일간

○ 검사위원

- 대 표 : 윤앵량 (現군의원)
- 검사위원 : 이정화 (現교수)
- 검사위원 : 채대섭 (前공무원)
- 검사위원 : 윤영선 (前공무원)

## 결산 감사의견서

### 함평군수 귀하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함평군의회로부터 함평군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받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설명·교육 등을 수료한 후 2026년 4월 13일부터 2026년 5월 2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함평군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통합기준에 따라 「①세입·세출의 결산, ②재무제표, ③성과보고서, ④기금결산, ⑤주요 정책 및 전략사업의 이행 실적, ⑥회계 투명성 및 내부 통제(지적사항 개선 여부)등」을 중심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 여부를 집중 확인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23종)의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함평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5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금고,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 내용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6. 5. 4.

### 함평군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윤영택 (윤영택)  
위 원 이정화 (이정화)  
위 원 채대섭 (채대섭)  
위 원 윤영선 (윤영선)



# || 목 차 ||

## I. 결산검사 결과

1. 결산검사기간	1
2. 결산검사위원	1
3. 결산검사진행	1

##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함평군 재정의 개황	2
2. 세입·세출 결산	
가. 총    괄	4
나. 일반회계(세입·세출)	5
다. 특별회계(세입·세출)	11
라.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15
3. 기금의 결산	16
4. 재무제표 결산	18
5. 성과보고서	20
6.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	
가. 채    권	21
나. 채    무	21
다. 공유재산	22
라. 물    품	22

### Ⅲ.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1.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예산편성 철저	23
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 철저	25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적인 징수대책 필요	27
4. 주요 시설비 사업 등은 계속비로 편성 운영	29
5. 특별회계 집행률 제고 방안 수립	32
6. 지방공기업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 법규 준수 운영	34
7. 명시이월 예산 당해연도 최종 추경 예산총칙에 반영	37
8. 이월예산 감축 방안 수립 필요	39
9.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확보에 진력	41
10. 적정 보조금 신청과 반납 최소화	43
11. 보조금 등 반환금(국, 도비)세입 예산편성 부적정	45
12.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사업시설세 특별회계의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46
13. 성인지 사업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 방안 수립	48
14.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방안 및 주요성과 미흡에 따른 개선, 권고	51
15. 기금 관리·운용 및 사용실적에 대한 개선 필요	53

## IV.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또는 향상된 사항

1. 임신·출산 지원 강화로 합계출산율 전국 5위 기록(보건소) ... 55

## V.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처리사항

1. 초과세입 과다하므로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함(기획예산실) 56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필요함(재무과) 57
3.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 편성 철저(재무과) 58
4.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예산반영 철저(재무과) 59
5.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의 일반예비비로의 통계목 변경은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기획예산실) 60
6. 일반예비비 지출은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하도록 함(기획예산실) 61
7. 완성에 수년을 요(要)하며 중단없이 이행하는 사업은 계속비로 운영하도록 함(기획예산실) 62
8.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집행률 제고방안을 수립하도록 함(농업정책실, 민원봉사과, 지역개발과) 63
9. 특별회계 체계적 관리 필요(지역개발과) 64
10. 시·도비 보조사업 예산 관리 철저(농업정책실, 문화체육과, 보건소) 65
11. 지방보조금 집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감축방안을 수립하도록 함(전부서) 66
12. 명사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기획예산실) 67
13.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의 개별 특별회계 운영 필요(맑음물사업소) 68
14. 정책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제고방안을 수립(해당부서) 69
15. 기금관리의 운용혁신이 필요 70



# I. 결산검사 결과

1. 결산검사기간 : 2026. 4. 13. ~ 5. 2. (20일간)

##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검 사 분 야
대표위원	윤 앵 량	○ 세입·세출결산 전반 ○ 기금에 대한 전반 ○ 채권·채무 등에 관한 사항
위 원	이 정 화	○ 세입·세출결산 전반 ○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 각종 보조금에 관한 사항 ○ 세입예산에 대한 추이 등
위 원	채 대 섭	○ 세입·세출결산 전반 ○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 지방세, 공유재산, 물품에 관한 사항 ○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
위 원	윤 영 선	○ 세입·세출결산 전반 ○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 기금에 관한 사항 ○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등

## 3. 결산검사 진행

가. 세입·세출 전반에 관한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적부 검사

나. 지방세, 교부세, 세외수입 등 전반에 관한 사항 적법여부 검사

다.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한 예산운영실태 전반 검사

라. 결산 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추가 자료 요구 및 확인

##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 1. 함평군 재정의 개황

가.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

(단위 :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계	세입(수입)	577,569,563,396	698,033,571,796	740,926,610,602	720,601,999,827	738,860,946,923
	세출(지출)	468,950,899,386	572,094,888,248	570,439,066,566	574,378,512,624	594,992,985,306
	결산상잉여금	108,618,664,010	125,938,683,548	170,487,544,036	146,223,487,203	143,867,961,617
일반회계	세입	554,747,395,422	682,066,530,242	719,013,746,782	694,069,694,866	703,858,706,432
	세출	451,098,746,286	560,819,926,578	560,404,980,846	557,306,269,744	580,190,100,596
	결산상잉여금	103,648,649,136	121,246,603,664	158,608,765,936	136,763,425,122	123,668,605,836
특별회계	세입	22,822,167,974	15,967,041,554	21,912,863,820	26,532,304,961	35,002,240,491
	세출	17,852,153,100	11,274,961,670	10,034,085,720	17,072,242,880	14,802,884,710
	결산상잉여금	4,970,014,874	4,692,079,884	11,878,778,100	9,460,062,081	20,199,355,781
※기금	수입	14,160,070,430	90,410,289,319	103,440,083,843	42,756,092,710	28,578,507,391
	지출	10,510,671,510	90,334,778,469	103,011,399,008	43,194,512,070	28,578,507,391
	결산상잉여금	3,649,398,920	75,510,850	428,684,835	△438,419,360	-

- 2025회계연도 총 세입은 738,860,946,923원으로 총 세출이 594,992,985,306원 발생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143,867,961,617원입니다.
- 2025회계연도 기금 수입은 28,578,507,391원, 총 지출은 28,578,507,391원 발생하여 결산상 잉여금은 0원입니다.

나. 함평군의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비용	총수익	재정운영 결과
2025년	2,852,299	24,264	2,828,034	573,036	463,425	(109,611)
2024년	2,741,843	21,412	2,719,922	515,906	431,015	(84,891)
증△감	110,456	2,852	108,112	57,130	32,410	24,720

- 함평군의 한해동안 살림살이를 정리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는 2025회계연도 순자산이 전년대비 108,112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0%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24,720백만원(29.1%) 감소하였습니다.

다. 함평군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

(단위 :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채무 총계 a(b+c+d)	0	870,000,000	0	0	0
공채 b	-	-	-	-	-
차입금 c	0	870,000,000	0	0	0
채무부담행위 d	-	-	-	-	-

- 2025회계연도말 채무는 없습니다.

라.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정자립도 = 7.17% (2024회계 7.47%)

$$\frac{(\text{지방세 } 26,524,335,400\text{원} + \text{세외수입 } 27,494,239,910\text{원})}{(\text{예산규모 } 753,596,888,860\text{원})} \times 100$$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 과년도수입
-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등

○ 재정자주도 = 43.04% (2024회계 41.24%)

$$\frac{(\text{자체수입 } 54,018,575,310\text{원} + \text{의존재원 } 270,303,792,390\text{원})}{(\text{예산규모 } 753,596,888,860\text{원})} \times 100$$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 2. 세입·세출 결산

### 가. 총괄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세입·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잉여금 (C=A-B)
계	753,596,888,860	738,860,946,923	594,992,985,306	143,867,961,617
일반회계	719,247,406,880	703,858,706,432	580,190,100,596	123,668,605,836
특별회계	34,349,481,980	35,002,240,491	14,802,884,710	20,199,355,781

### 《 세출 이월액 현황 》

(단위 : 원)

회계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 월 액(D)				순세계잉여금 (E=C-D)
		명시	사고	계속비	보 조 금 실제반납금	
계	-	69,803,891,143	37,302,440,920	-	9,452,772,226	27,308,857,328
일반회계	-	63,805,619,143	35,980,755,630	-	9,372,275,896	14,509,955,167
특별회계	-	5,998,272,000	1,321,685,290	-	80,496,330	12,798,902,161

-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 738,860,946,923원의 80.5%인 594,992,985,306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43,867,961,617원입니다.
- 결산잉여금 143,867,961,617원 중 명시이월비 69,803,891,143원, 사고이월비 37,302,440,920원, 보조금반납금 9,452,772,226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308,857,328원입니다.

#### 나. 일반회계

##### (1) 세 입

### 《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1)	실제수납액 (2)	정리보류액 (3)	미수납액 {1-(2+3)}
결 산 액	719,247,406,880	708,807,207,147	703,858,706,432	570,712,910	4,377,787,805
결산확인액	719,247,406,880	708,807,207,147	703,858,706,432	570,712,910	4,377,787,805

※ 세입부족금 : 15,388,700,448(실제수납액 - 예산현액)

- 수납액은 703,858,706,432원으로 예산현액의 97.88%로 15,388,700,448원이 세수 결손 처리 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3%가 수납되었습니다.

##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원)

일반회계 수납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703,858,706,432	703,858,706,432	0

※ 세입일계표 : 2026. 3. 9.기준

○ 일반회계 수납액은 금고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 《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현황분석 》

(단위 : 원)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2025년	719,247,406,880	708,807,207,147	703,858,706,432	570,712,910
2024년	689,681,356,610	699,099,466,371	694,069,694,866	112,649,710
증△감	29,566,050,270	9,707,740,776	9,789,011,566	458,063,200

연도별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 대비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정리보류액(%)
2025년	98.55	99.30	0.08
2024년	100.63	99.28	0.02
증△감	△2.08	0.02	0.06

○ 2025년도 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9,789,011,566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지방교부세 등 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정리보류액은 570,712,910원으로 전년보다 458,063,200원 증가 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정리보류액은 전년보다 0.06% 증가하였습니다.

### 《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결산 》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D=A-(B+C))	
<b>계</b>	719,247,406,880	708,807,207,147	703,858,706,432	570,712,910	4,377,787,805	
지방세	소 계	26,095,000,000	27,585,740,000	26,524,335,400	182,869,690	878,534,910
	보통세	25,825,000,000	26,635,955,080	26,085,230,170	9,512,950	541,211,960
	지난년도 수 입	270,000,000	949,784,920	439,105,230	173,356,740	337,322,950
세외수입	소 계	21,092,251,000	25,481,102,085	21,594,005,970	387,843,220	3,499,252,895
	경 상 적 세외수입	10,174,759,000	9,542,371,610	9,496,073,900	-	46,297,710
	임 시 적 세외수입	9,909,048,000	11,631,985,630	10,658,138,590		973,847,040
	지방행정제 재·부과금	463,526,000	922,494,720	788,489,860	2,982,180	131,022,680
	지난년도 수 입	544,918,000	3,384,250,125	651,303,620	384,861,040	2,348,085,465
지 방 교부세	지 방 교부세	254,728,000,000	254,747,762,000	254,747,762,000	-	-
조정 교부금 등	시군조정 교부금등	10,775,000,000	10,764,928,000	10,764,928,000	-	-
보조금	소 계	262,666,697,000	249,118,780,800	249,118,780,800	-	-
	국 고 보조금등	202,677,640,000	189,715,483,020	189,715,483,020	-	-
	시·도비 보조금등	59,989,057,000	59,403,297,780	59,403,237,780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등	143,890,458,880	141,108,894,262	141,108,894,262	-	-

-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3.77%인 26,524,335,400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1%인 21,594,005,9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36.19%인 254,747,762,000원, 조정교부금은 1.53%인 10,764,928,000원, 보조금은 35.39%인 249,118,780,800원, 보전수입은 20.05%인 141,108,894,262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정리보류액은 570,712,910원, 미수납액은 4,377,787,805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세 출

《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결 산 액	625,182,083,000	719,247,406,880	580,190,100,596	107,078,527,773	20,635,839,391
결산확인액	625,182,083,000	719,247,406,880	580,190,100,596	107,078,527,773	20,635,839,391
차 액	-	-	-	-	-

- 예산액은 625,182,08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94,065,323,88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719,247,406,880원입니다.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67%에 해당하는 580,190,100,596원이며, 이월액은 107,078,527,773원입니다.
-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하여 예산현액의 2.87%에 해당하는 20,635,839,391원입니다.

《 일반회계 예산이용·전용·이체·예비비사용 》

(단위 : 원)

구 분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금 액	-	53,213,000	-	3,758,698,530

-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군수(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11건에 53,213,000원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조성 외 10건에 사용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3,758,698,530원으로 전통시장 운영 지원 사업 외 34건에 사용하였습니다.

## 《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원)

일반회계 지출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580,190,100,596	580,190,100,596	0

※ 세출일계표 : 2026. 3. 9.기준

○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출납계산서의 금액과 일치 하였습니다.

## 《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집행현황 》

(단위 : 원, %)

구 분	2024년도 집 행 액	2025회계연도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 액	비율
계	557,306,269,744	719,247,406,880	580,190,100,596	80.67%	22,883,830,852	4.11%
일반공공행정	20,297,818,305	23,594,209,000	20,731,306,902	87.87%	433,488,597	2.14
공공질서및안전	18,411,159,220	53,275,883,640	31,304,573,100	58.76%	12,893,413,880	70.02
교육	2,130,356,760	5,579,232,000	5,562,079,160	99.69%	3,431,722,400	161.08
문화및관광	46,533,519,610	51,075,895,500	37,028,710,710	72.50%	△9,504,808,900	△20.43
환경	66,499,081,563	79,362,332,960	54,394,811,458	68.54%	△12,104,270,105	△18.20
사회복지	102,686,559,500	111,165,429,430	105,940,816,470	95.29%	3,254,256,970	3.17
보건	8,351,114,400	9,353,425,000	8,348,941,870	89.26%	△2,172,530	△0.03
농림해양수산	161,152,618,390	212,635,042,370	163,988,033,261	77.12%	2,835,414,871	1.76
산업·중소기업	17,433,431,590	47,033,648,910	40,992,596,290	87.16%	23,559,164,700	135.12
교통및물류	23,960,896,084	25,970,369,180	19,071,723,130	73.43%	△4,889,172,954	△20.41
국토및지역개발	27,499,798,110	30,463,299,890	26,001,288,135	85.36%	△1,498,509,975	△5.45
기타	62,349,916,212	68,521,647,000	66,825,220,110	97.52%	4,475,303,898	7.18
예비비	-	1,216,992,000	-	0.00	-	-

- 2025회계연도 세출 기능별 집행액은 일반행정 20,731,306,902원, 공공질서 및 안전 31,304,573,100원, 교육 5,562,079,160원, 문화 및 관광 37,028,710,710원, 환경 54,349,811,458원, 사회복지 105,940,816,470원, 보건 8,348,941,870원, 농림해양수산 163,988,033,261원, 산업·중소기업 40,992,596,290원, 교통 및 물류 19,071,723,130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001,288,110원, 기타 66,825,220,11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80.79% 입니다.
- 전년대비 집행액이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433,488,597(2.14%), 공공질서 및 안전 12,893,413,880(70.02%), 교육 3,431,722,400(161.09%), 사회복지 3,254,256,970(3.17%), 농림해양수산 2,835,414,871(1.76%), 산업·중소기업 23,559,164,700(135.12%), 기타 4,475,303,898(7.18%)이며,
- 전년대비 집행액이 감소한 분야로는 문화 및 관광 9,504,808,900(△20.43%), 환경 12,104,270,105(△18.20%), 보건 2,172,530(△0.03), 교통 및 물류 4,889,172,954(△20.41), 국토 및 지역개발 1,498,509,975(△5.45%)입니다.

## 다. 특별회계

### (1) 세 입

#### 《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

(단위 :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실제수납액	불 결 손 액	미수납액
계	34,349,481,980	35,191,654,501	35,002,240,491	0	189,414,01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007,766,000	1,065,329,063	1,065,329,063	-	-
건축진흥특별회계	359,999,000	498,773,880	377,577,450	-	121,196,430
발전소주변지역자원사업특별회계	31,133,000	31,134,450	31,134,450	-	-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5,479,133,980	15,540,254,872	15,540,254,872	-	-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314,092,000	5,500,716,333	5,500,716,333	-	-
수질개선특별회계	65,558,000	65,747,140	65,747,140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03,354,000	723,162,455	723,162,455	-	-
함평공영터미널특별회계	111,531,000	111,588,860	111,588,860	-	-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5,183,915,000	4,791,102,390	4,791,102,390	-	-
상수도특별회계	6,072,131,000	6,842,969,378	6,774,751,798	-	68,217,58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869,000	20,875,680	20,875,680	-	-
결산확인액	34,349,481,980	35,191,654,501	35,002,240,491	0	189,414,010
차 액	-	-	-	-	-

- 특별회계 수납액은 35,002,240,491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9%, 징수결정액 대비 99.46%입니다.
- 검사결과 세입예산 징수결정 및 수납은 과목별로 적정 계상되었고 미수납액은 건축진흥특별회계 121,196,430원, 상수도특별회계 68,217,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각 회계의 결산 확인액과 일치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원)

특별회계명	수납액	금고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계	35,002,220,491	35,002,220,491	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065,329,063	1,065,329,063	0
건축진흥특별회계	377,557,450	377,557,45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1,134,450	31,134,45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5,540,254,872	15,540,254,872	0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500,716,333	5,500,716,333	0
수질개선특별회계	65,747,140	65,747,14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23,162,455	723,162,455	0
함평공영터미널특별회계	111,588,860	111,588,860	0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4,791,102,390	4,791,102,390	0
상수도특별회계	6,774,751,798	6,774,751,798	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875,680	20,875,680	0

※ 세입일계표 : 2026. 3. 9.기준

-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집행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2) 세 출

《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30,655,574,000	34,349,481,980	14,802,884,710	7,319,957,290	12,146,143,050
주민소득지원 기금특별회계	1,007,766,000	1,007,766,000	299,904,300	-	707,861,700
건축진흥특별회계	359,999,000	359,999,000	46,914,380	-	313,084,62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1,133,000	31,133,000	31,117,950	-	15,050
농공지구조성 사업특별회계	11,785,226,000	15,479,133,980	7,497,603,840	6,977,870,600	1,003,659,540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5,314,092,000	5,314,092,000	608,415,210	342,086,690	4,363,590,100
수질개선특별회계	65,558,000	65,558,000	54,060,400	-	11,497,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03,354,000	703,354,000	616,723,510	-	6,134,160
함평공영터미널특별회계	111,531,000	111,531,000	101,415,670	-	10,115,330
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 특별회계	5,183,915,000	5,183,915,000	-	-	5,183,915,000
상수도특별회계	6,072,131,000	6,072,131,000	5,546,729,450	-	525,401,55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869,000	20,869,000	-	-	20,869,000
결산확인액	30,655,574,000	34,349,481,980	14,802,884,710	7,319,957,290	12,146,143,050
차 액	-	-	-	-	-

-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20,034,01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2,526,838,520원을 합한 22,560,853,520원입니다.
-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67%인 17,072,242,880원입니다.
- 이월액은 3,693,907,980원이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이월액입니다.
-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과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하여 7.69%인 1,734,656,350원입니다.

《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

(단위 : 원)

구 분	지 출 액	금고출납계산서 금 액	차 액
계	14,802,884,710	14,802,884,710	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99,904,300	299,904,300	0
건축진흥특별회계	46,914,380	46,914,380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1,117,950	31,117,950	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7,497,603,840	7,497,603,840	0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608,415,210	608,415,210	0
수질개선특별회계	54,060,400	54,060,40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6,723,510	616,723,510	0
함평공영터미널특별회계	101,415,670	101,415,670	0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	-	-	0
상수도특별회계	5,546,729,450	5,546,729,450	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	0

※ 세출일계표 : 2026. 3. 9.기준

○ 각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서의 집행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였습니다.

## 라.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2025회계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 · 사고이월 · 계속비이월 현황 》

(단위 : 원)

구 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72	107,106,332,063	153	69,803,891,143	219	37,302,440,920	0	0
일반회계	367	99,786,374,773	151	63,805,619,143	216	35,980,755,630	0	0
특별회계	5	7,319,957,290	2	5,998,272,000	3	1,321,685,290	0	0

- 명시이월은 153건 69,805,891,143원, 사고이월은 219건 37,302,440,920원이며, 이월 사업비는 예산현액 753,596,888,860원 대비 14.2%로서 전년대비 0.7% 증가하였습니다.

### 3. 기금의 결산

2025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성액	사용액	
계	25,243,134,230	867,195,871	3,335,373,162	2,468,177,290	26,110,330,101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2,882,193,490	63,521,290	91,037,820	27,516,530	2,945,714,78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 계정)	2,198,748,610	33,141,460	33,141,460	-	2,231,890,070
농산물안정기금	4,129,531,159	217,043,730	217,043,730	-	4,346,574,889
고향사랑기금	833,189,370	242,543,740	454,234,040	211,690,300	1,075,733,110
인재양성기금	9,844,125,553	484,205,130	1,181,785,970	697,000,000	10,328,330,683
투자유치기금	1,954,454,270	259,222,510	359,222,510	100,000,000	2,213,676,780
옥외광고발전기금	176,018,530	△136,078,570	23,247,870	159,326,440	39,939,960
환경보전기금	318,419,293	36,730,350	244,478,970	207,748,620	355,149,643
사회복지기금	1,618,065,979	41,784,131	48,784,131	7,000,000	1,659,850,110
재난관리기금	1,171,953,615	△373,869,310	678,445,250	1,052,314,560	798,084,305
식품진흥기금	116,434,361	△1,048,590	3,951,410	5,000,000	115,385,771

- 검사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6,110,330,101원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 25,243,134,230원보다 867,195,871원 증가하였습니다.
- 2025년도 기금 지출액은 2,468,177,290원이며 기금의 운용은 당초 계획 대로 집행되었습니다.

##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

(단위 : 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5년 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27,324,787,776	30,974,186,696	89,730,932,879	38,993,499,048	25,243,134,230	△2.0%
당해 연도 조성액	14,160,070,430	59,734,555,023	13,982,291,689	4,232,594,162	3,335,373,162	△30.0%
당해 연도 사용액	10,510,671,510	977,808,420	64,719,725,520	18,458,591,880	2,468,177,290	△30.2%
당해연도말 조성액	30,974,186,696	89,730,933,299	38,993,499,048	24,767,501,330	26,110,330,101	△4.3%

- 최근 5년간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당해연도말 조성액과 당해연도 조성액은 각각 4.3%, 30% 감소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 또한 30.2% 감소하였습니다.

#### 4. 재무제표 결산

2025회계연도 함평군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전년대비 증△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액	비율
자산총계	2,741,843	100.00	2,852,299	100.00	110,456	4.03%
유동자산	185,037	6.75	181,686	6.37	△3,351	△1.81%
투자자산	4,658	0.17	4,401	0.15	△257	△5.52%
일반유형자산	116,046	4.23	130,980	4.59	14,934	12.87%
주민편의시설	217,033	7.92	234,896	8.24	17,863	8.23%
사회기반시설	2,213,617	80.73	2,294,965	80.46	81,348	3.67%
기타비유동자산	5,452	0.20	5,371	0.19	△81	△1.49%
부채총계	21,412	100.00	24,264	100.00	2,852	13.32%
유동부채	12,139	56.69	13,524	55.74	1,385	11.41%
장기차입부채	-	0.00	-	0.00	-	-
기타비유동부채	9,273	43.31	10,740	44.26	1,467	15.82%
순자산총계	2,719,922	100.00	2,828,034	100.00	108,112	3.98%
고정순자산	2,546,650	93.63	2,661,071	94.10	114,421	4.49%
특정순자산	21,979	0.81	23,322	0.82	1,343	6.11%
일반순자산	151,293	5.56	143,641	5.08	△7,652	△5.06%

- 함평군의 자산은 2,852,299백만 원으로 전년도 2,741,843백만 원보다 110,456백만 원(4.03%) 증가하였습니다.
- 증가율이 높은 자산은 사회기반시설과 주민편의시설 순이며, 2025회계연도 부채는 24,264백만 원으로 전년도 21,412백만 원보다 2,852백만 원(13.32%) 증가 하였습니다.

## 《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전년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사업순원가	126,284	118,432	△7,852	△6.22%
II. 관리운영비	64,508	70,518	21,270	32.98%
III. 비배분비용	21,980	22,276	296	1.35%
IV. 비배분수익	14,189	12,034	△2,155	△15.19%
V. 재정운영순원가 ( I + II + III - IV )	198,584	199,192	608	0.31%
VI. 일반수익	283,476	308,804	25,328	8.93%
VII. 재정운영결과 ( V - VI )	(84,892)	(109,611)	△24,719	△29.12%

- 2025회계연도 함평군의 사업순원가는 118,432백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70,518백만 원, 비배분비용 22,276백만 원 및 비배분수익 12,034백만 원을 뺀 재정운영순원가는 199,192백만 원입니다.
- 2025회계연도 함평군의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109,611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 5. 성과보고서

함평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5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함평군은 본 회계연도의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총 84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7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 《 성과지표 달성현황 》

(단위 : 개, %)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B)	달성 (B)	미달성	달성률 (B/A)
계	21	84	175	11	109	55	68%
기획예산실	1	2	6	1	4	1	83%
관광정책실	1	4	12	3	2	7	42%
농업정책실	1	6	11	2	2	7	36%
총무과	1	3	6	0	4	2	67%
민원봉사과	1	3	8	0	8	0	100%
재무과	1	3	9	0	9	0	100%
인구경제과	1	5	9	0	5	4	56%
지역개발과	1	5	5	0	2	3	40%
문화체육과	1	4	6	0	5	1	83%
농어촌공동체과	1	5	5	1	4	0	100%
환경관리과	1	5	8	0	6	2	75%
주민복지과	1	7	16	1	4	11	31%
가족행복과	1	5	7	0	4	3	57%
축산과	1	4	8	0	4	4	50%
안전관리과	1	4	9	0	8	1	89%
건설교통과	1	5	9	0	7	2	78%
산림공원과	1	4	8	0	6	2	75%
보건소	1	2	9	1	7	1	89%
농업기술센터	1	3	13	2	11	0	100%
맑은물사업소	1	4	8	0	7	1	88%
의회사무과	1	1	3	0	0	3	0%

- 민원봉사과 등 4개 실과는 100% 달성한 반면에 관광정책실 등 17개 성과소는 100% 달성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 6.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

### 가. 채 권

#### 《 채 권 현 황 》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 연도 발 생 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0	0	-	0
일 반 회 계	0	0	-	0
기타특별회계	0	0	-	0

○ 검사결과 2025회계연도 채권은 없습니다.

### 나. 채 무

#### 《 채 무 현 황 》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상환소멸액	조 정 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0	0	0	0	0
일반회계	0	0	0	0	0
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0	0	0	0	0

○ 검사결과 2025회계연도 채무는 없습니다.

## 다. 공유재산

당해 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공유 재산 증 감 현 황 》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계	1,738,614,400,117	9,974,131,187	1,361,679,018	1,747,226,852,286	
행정 재산	소계	1,017,385,428,148	9,624,763,947	1,288,437,688	1,025,721,754,407
	공용재산	151,556,647,975	781,632,020	24,039,600	152,314,240,395
	공공용재산	862,876,212,849	8,843,131,927	1,264,398,088	870,454,946,688
	기업용재산	-	-	-	-
	보존용재산	2,952,567,324	-	-	2,952,567,324
일반재산	7,555,895,509	189,347,290	73,241,330	7,672,001,469	
건설중인자산	713,673,076,460	160,019,950	-	713,833,096,410	

- 당해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8,612,452,169원 증가한 1,747,226,852,286원입니다.
- 주요 증가요인은 공용재산의 증가에 기인하였습니다.

## 라. 물 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물 품 증 감 현 황 》

(단위 : 개,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 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 득	처 분	
수 량	508	33	3	538
금 액	731,966,431,000	1,335,148,000	19,319,000	733,282,260,000

- 당해연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57,417,710원 증가한 8,541,046,844원입니다.
- 주요 증가요인은 관용차량 등 구입에 따른 것입니다.

### Ⅲ. 개선 및 권고사항

#### 1.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예산편성 철저 (기획예산실, 재무과)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2025회계연도 세입예산 총괄을 살펴보면 세수 결손이 △14,735백만원 발생하고 있으며 2025년도를 제외한 최근에는 매년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음.

〈 연도별 초과세입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초과세입(합계)	5,297	2,895	23,492	8,359	△14,735
지방세	851	922	789	1,857	429
세외수입	5,860	4,346	9,818	6,274	1,486
지방교부세	△387	△10,095	12,287	38	20
조정교부금	1,222	2,726	2,347	3,485	△402
보조금	2,167	△1,866	△2,258	△3,701	△13,548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415	1,071	509	406	△2,720

###### □ 문제점

- 연도별 초과세입 발생현황을 보면 2025회계연도에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세수 결손은 주로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음.
- 2025년도의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총 3회 편성한 바 있으며, 최종 추경인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각 세입항목별로 초과세입 및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임.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sup>1)</sup> 제1항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제2항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2025년도 최종 추경예산 편성 시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여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적절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 것임.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함평군의 세수 결손 발생은 최근 들어 2025회계연도에 처음으로 발생한 현상이므로 예산 및 재무담당자는 세수추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하여 징수실적을 고려한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수입은 모두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5년도와 같은 과다한 세수 결손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하여 과다한 세수 결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임.

---

1)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 철저 (주민복지과)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살펴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는 편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2024회계연도의 경우에는 7,607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다음 연도인 2025년도의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에는 이를 계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순세계잉여금	16,971	△1,664	23,129	7,607	25,942
다음연도 세입예산 반영현황	-	-	-	-	-

#### □ 문제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보면 2022회계연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계상하여야 하는 다음연도의 세입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 과목(711-01)이 편성되지 않고 있어서 매년 세입예산이 과소계상되고 있는 실정임.
- 2024년도의 경우에는 7,607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다음연도인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종 추경인 제3회 추경까지도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같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세입예산 과목 없이 징수결정에

의해 수납하는 경우는 적절한 예산운용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함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입 예산 편성 시에는 해당 세입예산 과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이와 같은 세입예산 편성없이 징수결정에 의해 세입을 징수하는 것은 세입예산을 과소계상하게되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향후 세입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적극적인 징수대책 필요 (재무과)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4,946백만원으로 전년도 체납액 대비 △93백만원 감소함
- 지방세 체납액은 1,060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은 3,88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9백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2025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sup>2)</sup> 4,946백만원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3,886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8.6%를 차지하고 있어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 연도별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5,592	3,248	4,041	5,039	4,946
지방세	673	758	1,019	1,074	1,060
세외수입	4,919	2,490	3,022	3,965	3,886

- 또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미수납액 4,567백만원중 납세태만이 2,818백만원으로 그 비중이 61.7%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세 등의 미수납사유가 납세태만이 주된 사유이므로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징수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2) 체납액은 미수납액에 정리보류액을 합한 금액

< 2025회계연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납세 태만	자금 압박	행방 불명	폐업 부도	무 재산	기타	납기 미도래
합계	4,567	2,818	65	17	14	8	684	763
일반회계	4,378	2,818	65	17	14	8	684	763
건축진흥특별회계	121	-	-	-	-	-	-	-
상수도특별회계	68	-	-	-	-	-	-	-

□ 문제점

- 2025회계연도 함평군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4,946백만원으로 전년도 체납액 대비 △93백만원 감소하고 있으나 유형 지자체 대비 체납액 수준은 높은 편임. 이와 같이 2025회계연도 체납액은 전년 대비 감소한 수준이나 여전히 과다한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수납의 주된 사유가 납세태만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징수대책이 요망됨.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체납액 감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최초 미수납 시 부터 미수납 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납세태만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 과세실현을 위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체납자의 금융재산 및 부동산 등을 조회 및 압류 하는 등의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함.

#### 4. 주요 시설비 사업 등은 계속비 편성 운영 (해당부서, 총괄-기획예산실)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2025회계연도 결산 통합기준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기준을 보면 시설공사는 단위사업별로 총사업비가 시·군·구는 2,000백만원 이상, 광역시·도는 5,000백만원 이상, 서울특별시는 10,000백만원 이상으로 하며, 조사·연구용역비는 건당 300백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함평군은 동 결산 통합기준에 의하여 2025회계연도 주요사업으로 총 64개 사업, 총사업비 625,451백만원, 당해연도 사업비 131,330백만원을 편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총 64개 사업 중 부서별 주요사업 8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 함평군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2025년 예산	종합진도 (%)	주관부서
문화유물전시관 신축사업(전환)	8,200	2020.01~ 2025.05	-	80%	관광정책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9,000	2021.01~ 2024.12	-	77%	농업정책실
청년주택 조성사업	6,000	2024.12~ 2027.12	370	12%	인구정책과
학교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	7,811	2022.07~ 2025.11	4,544	50%	지역개발과
청정어장 재생사업	5,000	2024.01~ 2025.12	2,500	45%	농어촌 공동체과
자연재해위험개선 (신광지구)	25,056	2025.01~ 2025.12	4,566	30%	안전관리과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20,958	2020.09~ 2025.12	7,603	30%	맑은물 사업소
해상재난 대피시설·대피로 설치사업	33,997	2014.12~ 2027.12	781	40%	건설교통과

- 상기 도표 사업 중에 문화유물전시관 신축사업 및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은 2025년도 및 2024년도에 각각 완공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중단되었으며, 학교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 청정어장 재생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 (신광지구) 및 학교면 하수도 중점관리 정비사업 등은 각각 2025년도에 완공예정이었음에도 종합진도는 50% 미만이며, 해상재난 대피시설·대피로 설치사업은 사업기간이 무려 13년이며 2027년 완공예정임에도 종합진도는 40%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합평군 주요사업 등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고 당초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sup>3)</sup>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함.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동 법 제42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음.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3)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 함평군에서 2025회계연도에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4개의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에 해당하며 이들 사업들은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 대상인 것임.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함평군은 단위사업별 2,000백만원 이상 소요되는 시설비 사업들을 주요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러한 중장기 사업들은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에 해당하며 이들 사업들은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 대상인 것임.
- 현재 추진 중인 주요사업 등은 사업기간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 중단 및 지연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 등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들은 계속비로 관리함으로써 사업 기간 준수 및 연부액(年賦額) 관리 등 보다 체계적인 운용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함평군은 현재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64개 사업 등을 포함하여 대규모 시설비 사업 등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른 계속비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 5. 특별회계 집행률 제고 방안 수립 (해당부서)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2025회계연도 함평군 특별회계의 예산집행률은 14.0%로, 일반회계 집행률 (80.7%) 대비 저조한 실정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이 7,320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2,798백만원에 이르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낮은 상태임.

#### < 2025년도 예산 집행률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계	753,596	594,992	<b>79.0%</b>	107,106	27,308
일반회계	719,247	580,190	<b>80.7%</b>	99,786	14,510
특별회계	34,349	14,802	<b>14.0%</b>	7,320	12,798

#### □ 문제점

#### < 2025년도 집행률 저조 특별회계 현황 >

(단위: 백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순세계잉여금
공영개발사업	20	0	<b>0.0%</b>	20
원자력발전	5,183	0	<b>0.0%</b>	4,791
일반산업단지조성	5,314	608	<b>11.4%</b>	4,550
건축진흥	359	46	<b>12.8%</b>	330
주민소득지원기금	1,007	299	<b>29.7%</b>	765
농공지구조성사업	15,479	7,497	<b>48.4%</b>	1,064

- 202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의 예산집행률은 0%이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집행률은 11.4%, 건축진흥특별회계의 예산집행률은 12.8%,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의 예산집행률은 29.7% 및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예산집행률은 48.4%로서 전반적으로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저조한 실정임.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특별회계의 사업 특성상 세출사업이 특정 되어있는 관계로 세출예산이 여유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등 특별회계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즉,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으로써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률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수입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예산집행률이 매년 저조하여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이러한 사업 등은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 6. 지방공기업인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 법규 준수 운영 (지역개발과)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202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당초 예산 규모는 3,001백만원이었으나 제3회 추경을 통해 20백만원으로 대폭 감축 편성된 바 있음.

#### < 202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특별회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3,001	3,001	3,001	20

- 이와 같이, 최종 추경에서 대폭 축소 편성된 2025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집행률이 0%로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 2025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순세계잉여금
공영개발사업	20	0	0.0%	20

#### □ 문제점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운용 근거인 「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운용 조례」 제1조를 보면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4)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의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4)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경영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함평군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 또한, 「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운용 조례」 제5조에서는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5)에 따라 함평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에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 2020.12.31. 시행된 「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운용 조례」에 의해서 함평군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최초로 운영하여 제3회 추경까지 운영하다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운영을 중단하였으며 2025년도부터 동 특별회계를 기타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임.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운용 근거인 「함평군 공영개발사업 운용 조례」 제1조에서는 동 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산편성 및 결산 보고를 「지방공기업법」의 관련 규정6)에 의한 양식으로 작성하여 운용하여야 할 것임.
- 또한, 함평군에서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으로 운용할 실익이

- 
- 5) 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자를 1명만 두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 6) 제25조(예산의 내용) 지방직영기업의 예산은 예산총칙과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비용에 관한 수익적(收益的)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사업예산”이라 한다)
    2. 해당 사업연도의 자산·부채·자본의 신규 증감액에 관한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정(이하 “자본예산”이라 한다)
    3.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과 관련된 자금의 운영계획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4. 1.>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여 동 사업을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7. 명시이월 예산 당해연도 최종 추경 예산총칙에 반영 (기획예산실)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임.
- 함평군의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은 2025년도 최종 추경 (제3회추경)예산 총칙에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다음 연도 본예산 예산총칙에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도 본예산 예산총칙에는 전년도 명시이월을 규정하고 있음.

#### 〈함평군 2025년도 예산서 예산총칙 규정 현황〉

구분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비고
세입·세출예산	있음	있음	있음	있음	필수
계속비	-	-	-	해당없음	필수
명시이월	있음(전년도)	-	-	-	필수
채무부담행위	-	-	-	해당없음	필수
검토	-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 - 2025년도 명시이월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함				

#### □ 문제점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예산의 이월) 제1항7)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7)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40조(예산의 내용)<sup>8)</sup> 제1항에서는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함.

동 법 제40조 제2항에서는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최종 추경 예산총칙에 명시이월을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임.
- 함평군은 매년 본예산 예산총칙에는 전년도 명시이월을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명시이월은 다음연도 본예산 예산총칙에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함평군에서는 2025회계연도에 명시이월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5년도 최종 추경 예산 예산총칙에 이를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하여야 하는 것임.
- 향후, 명시이월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하여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최종 추경 예산총칙에 명시이월을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하도록 함.

---

8) 제40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8. 이월예산 감축 방안 수립 필요 (해당부서, 총괄-기획예산실)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함평군의 2025회계연도 이월액은 114,398백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6,639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15.2%로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이월액 비중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월액 중에서는 명시이월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연도별 이월액 발생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예산현액(A)	572,272	700,928	717,434	712,242	753,596
명시이월	58,556	68,091	66,198	56,555	76,272
사고이월	21,006	30,803	37,546	39,104	38,126
계속비이월	-	-	-	-	-
소계(B)	79,562	98,894	103,744	97,759	114,398
비중(B/A)	13.8%	14.1%	14.5%	13.7%	15.2%
보조금 반납	5,075	6,420	12,889	7,148	11,423

#### □ 문제점

- 함평군은 최근 5년간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중이 평균 14.3%에 이르는 등 그 비중이 높은 편이며, 2025회계연도에서는 15.2%로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
- 2025회계연도 이월액 중에서도 명시이월이 76,272백만 원으로써 전체 이월액의 66.7%에 이르고 있어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는 경우이나,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이월하고 있어서 사업의 진행이 더딘 경우가 많은 것임.

- 또한,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의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준공기한 미도래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 등은 사업 완공에 수년이 걸리는 계속비 사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업비로 관리하는 관계로 이와 같은 대규모 명시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것임.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함평군 2025회계연도 이월액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월액 규모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므로 주요 시설비 사업 등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여 이월액을 감축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또한, 2025회계연도의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과다하며, 이러한 명시이월 사업 대상 중에는 계속비 사업 등이 많은 실정이므로, 이들 명시이월 대상 사업 등을 계속비로 편성 및 운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사업기간 준수 및 연부액 관리 등으로 명시이월 규모를 감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9. 자금 없는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확보에 진력 (맑은물사업소)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의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이월 76,271,855,853원 중 자금 없는 명시이월은 6,467,964,710원과, 사고이월 38,126,629,210원 중 자금 없는 사고 이월액은 824,188,290원이 발생하였음.

〈 2025회계연도 자금 없는 이월 사업 현황〉

(단위 :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자금 없는 이월액		보조금 입금 여부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계		6,467,964,710	824,188,290	
농어촌 공동체과	학교면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농촌 협약)	시설비	927,300,000		입금
산림공원과	정책 숲 가꾸기	시설비	112,500,710		입금
		감리비	1,164,000	4,188,290	입금
맑은물 사업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 월암등 8개소 노후 관로 정비사업	시설비		820,000,000	미입금
	신광 소규모 공공하 수처리시설 통폐합정 비사업	시설비	112,000,000		미입금
	신광 소규모 공공하 수처리시설 통폐합 정비사업	감리비	100,0000		미입금
	함평향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시설비	95,000,000		미입금
	학교면 하수도 중점 관리 정비사업	시설비	3,650,000,000		미입금
	대동면 하수도 중점 관리 정비사업	시설비	1,370,000,000		미입금
	대동면 하수도 중점 관리 정비사업	감리비	100,000,000		미입금

##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제1항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제2항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2025년도 보조금 세입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하면 모두 세입예산에 편입되어야 하는 것임.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수입은 모두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5년도와 같은 보조금 미입금액 발생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명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 예산부서와 자금관리부서, 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반드시 실제 보조금 송금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자금 없는 이월액 최소화로 지방재정건전성 확보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함.

## 10. 적정 보조금 신청과 반납 최소화 (전부서, 총괄-기획예산실)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2025년도 국비 및 시·도비 등 보조금 반납액은 11,42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59.8%) 실정임.

#### < 연도별 보조금 반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보조금 반납	5,075	6,420	12,889	7,148	11,423

#### □ 문제점

- 2025회계연도 보조금 반납금 발생은 11,423백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실정이며, 주로 농림해양수산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조금 반납이 과다 발생하고 있음.
- 보조금 신청은 함평군 각 부서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정부 등 상급기관에 신청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보조금 잔액 11,423백만원은 정부 부처 및 전라남도에 반납하고 있는 것임.
- 함평군의 보조금 반납금 규모는 2025년도에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24년도에 정부에 반납한 보조금 규모는 약 2조 2,51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반납 규모가 방대한 실정이며 정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임.

〈 함평군 연도별 보조금 반납 분야별 발생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5,075	6,420	12,889	7,148	<b>11,423</b>
농림해양수산	1,944	2,223	8,755	3,505	<b>5,387</b>
사회복지	1,681	1,975	1,276	1,831	<b>4,029</b>
공공질서행정	12	266	37	35	920
환경	396	532	392	514	432
교통 및 물류	27	145	302	70	228
산업중소기업	244	200	1,444	329	207
국토 및 지역	49	113	305	480	92
기타	722	966	378	384	128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함평군 각 부서에서는 중앙정부 및 시·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시에는 엄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과도한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함평군의 경우는 농림해양수산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보조금 반납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자료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11. 보조금 등 반환금(국,도비) 세입 예산 편성 부적정 (기획예산실, 재무과)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및 문제점

〈2025년도 일반회계 보조금 반환금 세입 명세〉

(단위 : 원)

과 목 목	예산현액(A)	징수결정액	수납총액(B)	차액(A-B)
715 보조금 반환금	1,682,498,000	1,608,184,850	1,608,184,850	74,313,150
715-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313,949,000	1,244,878,130	1,244,878,130	69,070,870
715-02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368,549,000	363,306,720	363,306,720	5,242,280

#### □ 문제점

- 세입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 및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바,
- 2025 보조금 반환금 예산 현액(1,682,498,000원)보다, 실제 수납 총액(1,608,184,850원)으로 미수납액(74,313,150원)의 세수 결함 발생 요인 (보조금 반환금)은 반환이 확실시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과다 편성하였음.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예산 미수납은 징수절차의 적정성과 재정관리의 책임성이 요구되는바, 국도비 보조 반환금은 2024년 사업 추진 정산 잔액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세입 예산 (추경예산 활용)에 반영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함.

## 12.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안전관리과, 총괄-기획예산실)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함평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근거로 2025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 동 특별회계의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세출예산 5,183백만원은 전액 불용처리되고 있으나, 성과지표 달성률은 민방위교육 이수율이 95%, 비상대비(안보) 교육이수율이 100% 달성되고 있는 것임.

< 2025년도 원자력발전 특별회계 예산집행 현황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 >

(단위: 백만원)

정책목표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성과지표	성과지표 달성률
민방위교육 훈련 강화로 비상대비태세 강화	5,183	0	0%	민방위교육이수율	95%
				비상대비(안보) 교육이수율	100%

- 동 특별회계의 정책사업은 “민방위 운영”이며 정책사업 목표는 “민방위 훈련강화로 비상대비 태세강화”로서 안전관리과 일반회계의 “민방위 운영” 과 동일한 정책사업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있는 것임.
- 한편, 동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안전관리과의 일반회계 정책사업인 “민방위운영” 의 예산은 1,092백만원 중 975백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이 89.3%이며, 정책사업목표는 “민방위교육훈련 강화로 비상대비태세강화”이며, 성과지표 달성률은 민방위교육 이수율이 95%, 비상대비(안보) 교육이수율이 100% 달성되고 있는 것임.

〈 2025년도 일반회계 민방위운영 예산집행 현황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

(단위: 백만원)

정책목표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성과지표	성과지표 달성률
민방위교육 훈련 강화로 비상대비태세 강화	1,092	975	89.3%	민방위교육이수율	95%
				비상대비(안보) 교육이수율	100%

□ 문제점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9)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을 세입으로 하여 방사능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 등을 세출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안전관리과 일반회계의 “민방위 운영” 과는 구분되는 특정사업을 하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이, 2개 회계간의 정책사업이 서로 다른 목적을 띠고 있음에도 동 특별회계의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를 일반회계 “민방위운영” 사업과 동일하게 수립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민방위운영” 성과를 동 특별회계 성과로 차용(借用)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금액을 세입으로 하여 방사능 방재대책 및 지역개발 등을 세출사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정책사업인 “민방위 운영” 과는 서로 구분되는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

9) 제29조 ③ 시·도지사는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금액은 같은 호에 따른 시·군 및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구에 균등 배분한다. <개정 2024. 2. 20.>

1.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해당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은 제외한다)

### 13. 성인지 사업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 방안 수립 (전부서, 총괄-기획예산실)

#### 가. 현황 및 문제점

##### □ 현황

- 함평군이 지향하는 2025년도 성평등 목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여성취업률 제고, 안전한 사회생활 지원 및 여성의 복지수요 충족 등임.
- 함평군의 2025회계연도 성인지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57.28%로서 동 기간 예산집행률 92.36%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최근 3년간의 성인지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대체적으로 부진하고 예산집행률은 비교적 양호한 실정임.

#### < 최근 3년간 성인지 사업 목표 달성률 및 예산집행률 현황 >

(단위 : 개, 백만원)

연도별	성 과 목표수	목표 달성지수	목표 미달성지수	목표 달성률 (%)	예산액	집행액	예산 집행률 (%)
2025	103	59	44	57.28%	110,434	102,001	92.36%
2024	96	50	46	52.08%	117,500	108,210	92.09%
2023	77	38	39	49.35%	87,883	81,456	92.69%

- 성인지 예산제도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sup>10)</sup>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또한, 「지방회계법」 제18조의11)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10) 제36조의2(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8.]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보고서를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함평군의 2025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별 집행현황을 보면 101개 사업에 예산집행률은 92.36%를 보이고 있으며, 자치단체 특화사업 예산이 사업개수 51개, 예산집행액이 95,43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집행액의 93.56%를 차지하고 있음.

〈 2025년도 성인지 예산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별	사업개수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계	101	110,434	102,001	92.36%
양성평등추진사업	8	2,894	2,749	94.99%
성별영향평가사업	29	2,799	2,423	86.57%
자치단체특화사업	51	103,281	95,439	92.41%
기 타	1	1,458	1,388	95.20%

□ 문제점

- 2025년도 함평군의 성인지 예산사업의 성과목표달성률은 57.29%로 저조한 반면에 예산집행률은 92.36%로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3년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임.
- 이와 같은 유사한 패턴의 발생원인은 성인지 세출예산과 목표달성을 위한 성과지표간의 연계성이 부족하여 세출예산을 충분히 집행하고도 이를 성과목표 달성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 또한, 함평군 성인지 예산은 대부분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사업은 주로 기존의 함평군 일반 세출사업으로서 성인지 관련 적정 목표

11) 제18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결산서에는 성인지 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인지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설정과 성과지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성인지 사업의 예산집행률과 성과지표 달성률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 또한, 성과 미달성 사업의 성과분석 시에는 목표수준의 합리성, 성과지표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여 향후에는 미달성 지표가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나아가, 함평군 성인지 예산사업 중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성인지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양성평등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사업 등을 확대하여 성인지 예산사업의 다각화를 함께 도모해 나가야 할 것임.

14.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방안 및 주요성과 미흡에 따른 개선, 권고  
 (관광정책실, 농업정책실, 주민복지과, 축산과, 의회사무과 총괄-기획예산실)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개, %)

구분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달성률 (B/A)
		개수	지표수(A)	달성(B)	미달성	
계	21	84	175	120	55	68.6
기획예산실	1	2	6	5	1	83.3
관광정책실	1	4	12	5	7	41.7
농업정책실	1	6	11	4	7	36.4
총무과	1	3	6	4	2	66.7
민원봉사과	1	3	8	8	0	100.0
재무과	1	3	9	9	0	100.0
인구경제과	1	5	9	5	4	55.6
지역개발과	1	5	5	2	3	40.0
문화체육과	1	4	6	5	1	83.3
농어촌공동체과	1	5	5	5	0	100.0
환경관리과	1	5	8	6	2	75.0
주민복지과	1	7	16	5	11	31.3
가족행복과	1	5	7	4	3	57.1
축산과	1	4	8	4	4	50.0
안전관리과	1	4	9	8	1	88.9
건설교통과	1	5	9	7	2	77.8
산림공원과	1	4	8	6	2	75.0
보건소	1	2	9	8	1	88.9
농업기술센터	1	3	13	13	0	100.0
맑은물사업소	1	4	8	7	1	87.5
의회사무과	1	1	3	0	3	0.0

○ 50% 미만 미달성 부서 분석 현황

(단위 : 개)

부서명	지표수	성과달성도			미달성 주요 사유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계	50	6	12	32	
관광정책실	12	3	2	7	○ 성과목표지표 설정 시 계속사업비로 판단하여 당해연도 성과미달성 표기
농업정책실	11	2	2	7	○ 성과지출 성과달성도 분석 오류
주민복지과	16	1	4	11	○ 예산액 대비 결산 후 차액 발생으로 성과 미흡 판단 ○ 자활사업 참여자 홍보 미흡으로 실적저조 ○ 성과달성도 분석 오류 및 오기
축산과	8	0	4	4	○ 가축재해보험 가입율 저조 ○ 조사료 생산 면적 확대 목표 과다 설정
의회사무과	3	0	0	3	○ 목표설정 미흡으로 실적 없음

- 함평군은 2025년에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 을 비전으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전략목표(21개), 정책사업목표(84개)로 정하여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음.
- 성과보고서를 보면 지표달성이 100% 이상 초과 달성한 부서는 민원봉사과를 포함한 4개 실과이며, 50% 미만 미달성 부서는 관광정책실을 포함한 5개 부서임.
- 2025년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성과목표 달성률은 68.6%로 저조한 실정임.

#### □ 문제점

- 성과지표 목표달성률 결과를 보면 부서별로 최소 0.00%에서 최대 100% 까지 분포돼 있음.
- 이는 계획 수립 시 지출 설정이 부적절했거나 지표설정이 적절하더라도 목표를 너무 높게 또는 너무 낮게 설정했다고 봄.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성과지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야하고 특히, 최근 3년간의 미달성 성과지표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이 높은 사업단위는 향후 지표설정 시 달성 가능성 뿐만 아니라 군민의 행정수요를 감안 하여 좀 더 강도 높은 지표 설정이 필요함.
- 성과지표 분석 등을 통해 불가능한 지표를 설정하거나 목표를 낮게 설정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권고함.

## 15. 기금 관리·운용 및 사용실적에 대한 개선 필요(기획예산실)

###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기금 조성 내역(11개 기금)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㉓ = ㉑ + ㉒
	계 ㉒ = ㉑ - ㉔	조성액 ㉑	사용액 ㉔	
25,243	867	3,335	2,468	26,110

※ 전년도말 조성액 대비 당해연도말 조성액 103%

○ 기금별 당해연도 사용액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㉓ = ㉑ + ㉒)
		계 ㉒ = ㉑ - ㉔	조성액 ㉑	사용액 ㉔	
계	25,243	867	3,335	2,468	26,110
농산물안정기금	4,130	217	217		4,347
고향사랑기금	833	243	454	212	1,076
인재양성기금	9,844	484	1,182	698	10,328
투자유치진흥기금	1,954	259	359	100	2,214
옥외광고발전기금	176	△136	23	159	39
환경보전기금	318	37	245	208	355
사회복지기금	1,618	42	49	7	1,660
재난관리기금	1,172	△374	678	1,052	798
식품진흥기금	116	△1	4	5	11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882	64	91	27	2,94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199	33	33		2,232

## □ 문제점

- 2025년 초 함평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총11개 기금을 관련 조례에 의거 운용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운용실적이 73.99%로 양호하나 농산물안정기금의 0.00%와 투자진흥기금 17.83%는 기금 조성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사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을 활용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0.00%로 사용 실적이 없음.
  
- 농산물 안정기금의 경우 함평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에 의거 최저가격 결정은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최근 3년간 종목별(양파, 마늘, 건고추) 생산비의 평균을 적용하고 매년 2월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군보에 고시, 게재하여야 하고 농산물 가격 출하시기에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조례 개정 이후 단, 1회 지원)

## 나. 개선 및 권고사항

- 기금사업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함.
- 현재 각 기금별로 산재해 있는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부서 지정 및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 Ⅲ. 개선 및 향상된 사항

#### □ 임신·출산 지원 강화로 합계출산율 전국 5위 기록(보건소)

##### ○ 지원내용

- 임신 기간 : 임신부 등록·관리, 무료 초음파 검사 쿠폰 및 임신 축하 선물 지원
- 출산 이후 :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 원 지원, 육아용품 대여, 출산축하선물 및 외식쿠폰 지원
- 출산 장려 : 출산장려금(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700만 원 넷째이상 1,000만 원 지원)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지원
- 성장 지원 :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30만 원 지원

##### ○ 합계출산율 현황

구 분	2022	2023	2024	2025
전국	0.78	0.72	0.75	0.80
전남	0.97	0.97	1.03	1.10
합평	0.88	1.22	1.32	1.43

\*\*출처 : 국가데이터처 자료

##### ○ 2025년 임신·출산 신규시책

- 안심콜 구급서비스에 임신부의 질병 및 특성 사전등록관리
- 임신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제공
- 마음건강치유센터와 협약 임신부, 산모 마음휴가 힐링캠프 운영
- 다문화 임신부 상담 통역 서비스, 모유수유, 산후관리 교육 등

##### ○ 추진성과

- 2025년 합계출산율 1.43명으로 3년 연속 상승세 유지
- 전국 평균(0.8명) 및 전남 평균(1.1명)보다 높으며, 전국 5위 기록
- 2022년 0.88명 → 2025년 1.43명으로 약 1.63배 증가
-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보이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

## IV. 2024회계연도 통합 결산 개선 및 권고 처리사항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1. 초과세입 과다하므로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 하도록 함 (기획예산실, 재무과)</p>	<p>○ 함평군의 초과세입 과다발생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으므로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초과 세입의 과다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것임.</p>	<p>○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검사 개선 및 권고에 따른 적정 세입예산 편성 협조 공문 시달 ※ 기획예산실-6743(2025.5.21.)</p>	<p>○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 등 세입과목에 대한 적정한 예산 편성 시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p>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대책 필요함 (재무과)</p>	<p>○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일정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고액 및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체납액 감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p>	<p>○ 2024회계연도 통합결산 검사 개선 및 권고에 따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극 징수</p>	<p>○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적극 납부 독려</p>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3.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편성 철저 (재무과)</p>	<p>○ 세외수입 각 세목의 성격, 당해 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 예산(추경예산 활용)에 반드시 반영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함.</p>	<p>○ 세외수입 편성 실태 점검 및 체납액 관리 강화</p> <p>○ 세입관리 기본교육을 위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시스템 교육 실시 ※ 재무과-11543(2026.3.18.)</p>	<p>○ 세외수입 관리체계 지속 개선 및 세외수입 담당자 기본교육을 통한 세외수입 예산편성 지침 및 관련 법령 교육 실시</p>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4.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예산반영 철저 (재무과)</p>	<p>○ 국고 및 도비 보조금의 정산 철저로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세입과 세출의 정확한 추계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기 바람.</p>	<p>○ “적기 사업 정산 및 반환금 즉시 납부” 공문 시달 ※ 재무과-19420(2025.5.14.) ※ 기획예산실-6728(2025.5.20.)</p>	<p>○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즉시 납부 독려</p>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5. 재해·재난 목적예비의 일반예비비의 통계목 변경은 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기획예산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그 용도 및 편성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비 지출 시에는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li> <li>○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서는 단위사업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예산의 변경 사용이 불가하도록 기준을 시달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비비 통계목간 예산변경 시에는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의 분야·부문별 설정 기준에 따르면, 예비비는 분야 '160 예비비', 부문 '161 예비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별도의 정책사업으로 관리됨에 따라 '예비비'라는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음.</li> <li>○ 또한, 동 기준에 따르면 예산 변경 사용이 가능한 목그룹에 '예비비 및 기타(800)'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비비는 통계목 간 변경 사용 제약한다는 규정이 없음.</li> <li>○ 다만,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본래의 예산 목적을 훼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 간 통계목 변경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처리하겠음. ※ 기획예산실-6744(2025.5.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제43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신중히 처리하겠음.</li> </ul>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6. 일반예비비 지출은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기획예산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그 용도 및 편성한도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비 지출시에는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li> <li>○ 따라서, 향후 폭염, 폭설 및 호우 피해복구비 등은 일반예비비가 아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비 사용 승인시 용도를 충분히 검토 한 후 예비비 편성목에 맞게 처리하겠음. ※ 기획예산실-6744(2025.5.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서의 예비비 사용 협의 요청 시, 사업의 적절성 및 적시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용도에 맞게 협의 및 승인하겠음.</li> </ul>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7. 완성에 수년을 요(要)하며 중단없이 이행하는 사업은 계속비로 운영하도록 함 (기획예산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평군은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사업들을 주요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러한 중장기 사업들은 「지방재정법」제42조(계속비)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성하기 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에 해당하며 이들 사업들은 중단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계속비 대상인 것임.</li> <li>○ 따라서, 함평군은 완성하기 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로서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제42조(계속비)를 준수하여 계속비로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임.</li> <li>○ 또한, 2024회계연도 명사이월 사업중에는 이월사유로 장기계속사업으로서 준공기한 미도래를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은 향후에는 계속비 대상으로서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속비 사업은 재정운영의 안전성과 연도별 예산편성 변동성을 줄여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li> <li>○ 현재의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는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사업 지연이나 이월사업비 증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li> <li>○ 이에 따라, 장기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예산이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음. ※ 기획예산실-6744(2025.5.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장기적인 공사기간을 갖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적기에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음.</li> </ul>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8.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집행률 제고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민원봉사과, 지역개발과, 농업정책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특별회계 운영 개선</li> <li>○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으로써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율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수입 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회계의 집행률 제고방안 및 효율적 재정 운영 방안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봉사과-29617(2025.5.23.)</li> <li>※ 지역개발과-9319(2025.5.22.)</li> <li>※ 보건소-24278(2025.5.2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회계의 예산 집행률 등을 분석하여 예탁 가능재원을 파악</li> <li>○ 이자수익 활용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 예탁을 통해 발생한 이자 수익은 주민소득 지원을 위한 신규 또는 보완사업에 재투입</li> </ul> </li> </ul>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9. 특별회계 체계적 관리 필요 (지역개발과)</p>	<p>○ 특별회계 설치 후 목적이 달성되면 행정절차를 거쳐 폐지하여야 하고, 일몰제(존속기한 5년)를 초과하여 운영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운영되어야 하는데, 의회의 승인도 없고, 2021년 이후 운영 실적이 전무하므로 존치 필요성 재검토 및 불필요할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폐지하도록 권고</p>	<p>○ 조례 개정(안) 검토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p> <p>○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금통장 출금 및 패쇄 요청 ※ 지역개발과-21641(2025.12.9.)</p>	<p>○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특별회계는 폐지를 전제로 조례 개정을 추진 예정</p>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10. 시·도비 보조사업 예산 관리 철저 (농업정책실, 문화체육과, 보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담당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실제수령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없도록 해야 함.</li> <li>○ 만약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 할 경우 어떤 사유로 발생하여 반납 하는지 원인을 분석하여 자체재원이 초과지출 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방안을 연구하고 인사이동이나 사무 분장 변경시에는 철저한 인계인수와 업무 연찬을 권고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 추진관리 강화 각 보조사업별 사업계획 대비 집행현황 수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정책실-15429(2025.5.15.)</li> <li>※ 문화체육과-9306(2025.5.23.)</li> <li>※ 보건소-24278(2025.5.20.)</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집행 전·중·후 점검 체계 강화 및 예산 편성 시점 부터 보조금 교부액 확인 절차 표준화</li> </ul>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11. 지방보조금 집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감축방안을 수립하도록 함 (전부서)</p>	<p>○ 중앙정부에서는 지방보조금 6개 비목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자체재원)의 2개 비목에 대한 집행액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를 감축하고 있으므로 동 지방보조금의 편성 및 집행액을 줄어나감으로써 세출효율화에 대한 자체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p>	<p>○ 2025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부서에 자체평가 후 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음. ※ 기획예산실-6744(2025.5.21.)</p>	<p>○ 지방보조금의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재정 낭비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음.</p> <p>○ 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의 임기가 종료하거나 신규위원 위촉 사유발생 시 전문성을 갖춘 심의위원을 발굴하고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p>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12.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예산총칙에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기획예산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최종 예산총칙에 명시이월을 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임.</li> <li>○ 따라서, 함평군에서는 2024회계연도에 명시이월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2024년도 최종 추경예산 예산총칙에 이를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운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서는 당해연도 최종 예산 총칙에 명시이월을 규정하여 의결을 받으라는 규정은 없으며,</li> <li>○ 현재 본예산과 당해연도 최종추경예산 회기 기간이 동일하므로, 당해연도 최종 예산 총칙에 명시이월을 규정 하는 것은 실익이 없음.</li> </ul> <p>※ 기획예산실-6744(2025.5.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연도 최종 추경예산 의회 회기 일정이 차년도 본예산 의회 회기 일정보다 늦을 경우에는, 당해연도 최종 추경 예산 총칙에 명시이월을 규정할 계획임.</li> </ul>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13.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의 개별 특별회계 운영 필요 (맑은물사업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회계 일원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사업을 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과 명확성 제고 필요</li> </ul> </li> <li>○ 조례 목적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회계 조례의 설치목적을 구체화하여 상수도 사업 전반을 포괄할 근거 필요</li> </ul> </li> <li>○ 하수도 특별회계 전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 규모와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사업의 특별회계 전환 추진 필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사업의 단계적 특별회계 이관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방안 검토</li> <li>○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사항 및 회계분리 대상 항목 검토 및 사전 정비 계획 추진 ※ 맑은물사업소-7005(2025.5.2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수도 특별회계 관련 조례에 명확한 사업운영 근거 명문화</li> <li>○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전환을 위한 사전자료 정비</li> </ul>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14. 정책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제고방안을 수립 (해당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을 제고방안을 수립- 성과지표 목표달성률이 낮은 사업단위는 향후 지표를 설정할 때 달성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목표설정하고, 성과지표 목표달성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 필요함.</li> <li>○ 목표달성률이 높은 사업단위는 향후 지표를 설정할 때 달성 가능성 뿐만아니라 군민의 행정 수요를 감안하여 좀 더 강도 높은 지표 설정이 필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년 성과지표 미달성 항목에 대해 지표설정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자체점검 실시</li> <li>○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과 성과의 연계 정도를 분석하여 부서 내 성과관리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정책실-10179(2025.5.22.)</li> <li>※ 인구경제과-21477(2025.5.21.)</li> <li>※ 지역개발과-9319(2025.5.22.)</li> <li>※ 농어촌공동체과-15006(2025.5.21.)</li> <li>※ 주민복지과-15227(2025.5.23.)</li> <li>※ 가족행복과-26101(2025.5.23.)</li> <li>※ 건설교통과-58997(2025.5.20.)</li> <li>※ 안전관리과-10652(2025.5.20.)</li> <li>※ 산림공원과-10622(2025.5.23.)</li> <li>※ 보건소-24278(2025.5.20.)</li> <li>※ 맑은물사업소-7005(2025.5.21.)</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달성 항목 목표치 조정 및 개선 방안 마련</li> <li>○ 분기별 자체 점검 체계 구축을 통해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관리 강화</li> </ul>

항 목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향후 추진
<p>15. 기금관리의 운용혁신이 필요 (기획예산실)</p>	<p>○ 기금 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혁신 필요함.</p>	<p>○ “2024 회계연도 통합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에 따른 기금 효율적 운용 요청” 공문 시달 ※ 기획예산실-6700 (2025.5.20.)</p>	<p>○ 차년도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수립 시 기금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과 사전 협의 및 당해연도 기금 사업 집행 현황, 기금운용 성과평가(매년 7월 중 실시) 등 종합 검토 후 기금 예산 편성을 실시할 계획임.</p>